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 에너지 수요를 고효율·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전부개정〉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17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4

1. 총괄 검토 ····· 4

가. 발의 배경 및 전부개정 필요성 ····· 4

나. 조문 구성 및 주요 내용 ····· 7

2. 주요 조문별 검토 ····· 14

가. 총칙(안 제1장) ····· 14

1) 목적, 정의 및 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 14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조치 등(안 제2장) ····· 18

1)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주기 명시 및 계획 포함 사항 구체화 등 ···· 18

2) 에너지저장의무 삭제 및 수급안정 조치 미이행자 명단 공표 ····· 23

3)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28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 ····· 34

다. 에너지공급자에 관한 조치(안 제3장) ····· 37

1)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공표 등 ····· 37

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안 제4장) ····· 40

1)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의 일원화 ····· 40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실적 평가 및 결과 공표 등 ····· 46
3)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내용 구체화 및 협약 이행실적 평가·공표 등 ····· 50
4)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 마련 ····· 54
5)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신설 등 ····· 60
6) 미활용 열에너지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 ····· 66
7) 목표에너지원단위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 등 ····· 70
8)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등록·관리 등의 삭제 ····· 75
9) 효율관리기자재 관련 의무 면제기준 신설 ····· 78
10) 시험기관 관리 강화 및 고효율인증 유효기간 명시 등 ····· 83
11) 수송 관련 시책의 분리 ····· 97
12)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 ····· 108

마. 그 밖의 사항(안 제5장～제7장) ····· 115

1) 한국에너지공단 ····· 115
2)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등 ····· 120

※ 참고자료 ····· 132

1. 개별법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대상 수급 안정 조치 ····· 132
2.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계획·실적 제출 대상기관 ····· 134
3.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 현황 ····· 135
4.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요 ····· 136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 효율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또한,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됨.

이에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와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및 대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을 도입하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 제고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근본적으로 고효율

·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역할 및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계획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를 추진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의무이행 및 결과 공표 등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

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활용 및 민간단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 이용 관련 유공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70조).

바.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상 이원화되어 있던 공공·민간사업자

의 의무를 통일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이행 의무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사후관리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 제15조).

아.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를 분리하여 에너지손실의 개선방안에 대해 에너지관리지도의 경우도 개선명령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2조・제23조).

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아닌 에너지사용자가 진단기관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2조).

차.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및 사용촉진을 위하여 미활용 열에너지의 범위와 유형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효율측정, 신고 등 의무사항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제73조 및 제82조).

타. 효율관리시험기관과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인증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통일하고 시험기관 관리강화를 위하여 취소된 시험기관은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제34조 및 제36조).

파. 자동차와 자동차용 타이어 관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등의 부분을 분리하여 수송부문으로 신설함(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발의 배경 및 전부개정 필요성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들의 에너지안보 조치 강화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상시화되면서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절약 등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들은 수요 효율화를 에너지수급의 안정과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충족하는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1] 최종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부문에 대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강구하는 등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2]

우리나라 또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수요 효율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가 에너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

1)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에너지효율 기술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함(IEA, □World Energy Outlook 2019)

2) 독일은 공공건물 난방구역 제한, 사무실 난방온도 제한, 건물 외부조명 금지 등을 추진하였고, 프랑스는 소매상 조명 30% 소등 및 난방온도 제한 등을 추진함.

그런데 우리나라는 철강, 정유, 석유화학, 기계·전자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로 이루어진 반면에, 한 국가의 에너지 소비율을 보여주는 에너지원단위[3]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바,[4]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경제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제도상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함으로써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법률로서 1979년 12월 제정된 이래, 1991년 12월, 1995년 1월 전부개정이 있었고, 2000년 이후에는 2007년 12월 한 차례 전부개정 이후 단편적 수요에 따라 일부개정만 이루어져 왔음.

이에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자발적 협약체결 기업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 구축, 미활용 열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목표에너지원단위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등 신규 시책의 도입·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3) 에너지원단위(energy basic unit)는 에너지 소비량을 생산량 또는 매출액 등으로 나눈 비율로 에너지효율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음.

4) 2020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0.126으로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영국: 0.055, 독일: 0.065) 대비 최대 2.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 에너지효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전기저널, '주요 선진국 에너지효율 정책 추진 동향', 2022. 11. 22.)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의무 명확화, 공공·민간 부문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 일원화,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구속력 강화, 대기전력시험기관 등 시험기관 자격요건 강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을 제고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변화하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 패러다임에 맞춰 국가 에너지안보를 확립하고,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법체계 정비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산업·건물·수송·기자재 등 전 부문의 에너지효율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에서 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제2204495호)[5]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5)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임(2024.10.2. 발의).

나. 조문 구성 및 주요 내용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총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에너지공급자에 관한 조치, 산업·건물, 에너지사용기자재, 수송, 열사용기자재 등 각 부문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한국에너지공단에 관한 사항, 보칙 및 벌칙 등 총 7장 83개 조문으로 구성됨.

개정안의 제명 및 체계는 기본적으로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따르고 있으나, 에너지공급자에 관한 조치를 규율하는 별도의 장(안 제3장)을 신설하고,

기존의 제3장부터 제5장까지를 1개의 장(안 제4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으로 통합하되, 기존에는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규정에서 포괄하던 수송부문을 별도의 절(안 제4장제3절)로 분리하여 신설한다는 점에서 현행법 체계와 차이가 있음.

<u>현행법 및 개정안 대비표</u>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개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개정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5조 삭제 <2018. 4. 17.>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5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개정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6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개정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제7조(공공기관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개정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홍보)	개정(현행§13)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제9조(금융・세제상의 지원)	유지(현행§14)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제3장 에너지공급자에 관한 조치**	장 신설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제10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개정(현행§9)
제13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제4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제1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개정(현행§10)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개정(현행§11)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3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개정(현행§12)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14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개정(현행§25～§27)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제1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	개정(현행§25)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제1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조문정비(현행§27의2)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7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개정(현행§28)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제18조(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개정(현행§28의2·§28의3)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제19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개정(현행§31)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제20조(에너지진단 등)	개정(현행§32)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21조(진단기관의 지정 등)	개정(현행§32·§33)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제22조(진단기관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개정(현행§32·§33)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개선명령)	개정(현행§34)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24조(미활용 열에너지의 사용)	개정(현행§36)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제2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개정(현행§35)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제26조(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정비(현행§36의2)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제27조(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정비(현행§36의3)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제2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개정(현행§15)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삭제(안§18로 통합)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제29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내용개정(현행§16)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삭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삭제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제30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유지(현행§18)
제32조(에너지진단 등)	제31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정비(현행§19)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2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정비(현행§19)
제34조(개선명령)	제33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개정(현행§21)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제34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개정(현행§22)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삭제
제36조(폐열의 이용)	제35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개정(현행§23)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제36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개정(현행§24)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제3절 수송 관련 시책**	신설
	제37조(자동차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등)	신설(현행§15에서 분리)
	제38조(자동차등의 사후관리)	신설(현행§16에서 분리)
	제39조(연비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신설(현행§24에서 분리)
	제40조(자체측정 승인의 취소 등)	신설(현행§24에서 분리)
	제41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개정(현행§17)
	제42조(과징금 부과)	개정(현행§17의2)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4절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37조(특정열사용기자재)	제43조(특정열사용기자재)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제44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45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46조(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제47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제48조(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제5장 시공업자단체		삭제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제49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제50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제43조(건의와 자문)	제51조(건의와 자문)	
제44조(「민법」의 준용)	제52조(「민법」의 준용)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제5장 한국에너지공단**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제53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제46조(법인격)	제54조(법인격)	
제47조(사무소)	제55조(사무소)	
제48조(정관)	제56조(정관)	
제49조(설립등기)	제57조(설립등기)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1조(임원)	제59조(임원)	
제52조 삭제 <2009. 1. 30.>		
제53조(임원의 직무)	제60조(임원의 직무)	
제54조 삭제 <2009. 1. 30.>		
제55조 삭제 <2009. 1. 30.>		
제56조(직원의 임면)	제61조(직원의 임면)	
제57조(사업)	제62조(사업)	정비
제58조(비용부담)	제63조(비용부담)	
제59조(자금의 차입)	제64조(자금의 차입)	
제60조(회계 등)	제65조(회계 등)	정비
제61조(이익금의 처리)	제66조(이익금의 처리)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67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정비
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4조(「민법」의 준용)	제69조(「민법」의 준용)	
제7장 보칙	제6장 보칙	
	제70조(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신설
제65조(교육)	제71조(교육)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제72조(보고 및 검사 등)	정비
제67조(수수료)	제73조(수수료)	개정
제68조(청문)	제74조(청문)	개정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개정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삭제(안§11②으로 통합)
제8장 벌칙	제7장 벌칙	
제72조(벌칙)	제77조(벌칙)	개정
제73조(벌칙)	제78조(벌칙)	
제74조(벌칙)	제79조(벌칙)	개정
제75조(벌칙)	제80조(벌칙)	
제76조(벌칙)	제81조(벌칙)	개정
제77조(양벌규정)	제82조(양벌규정)	
제78조(과태료)	제83조(과태료)	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국내외 환경 및 규범 변화 등을 반영하여 목적 및 책무 규정에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의 규정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추가하였음(안 제1장).

둘째,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문화된 에너지사용자·공급자에 대한 에너지저장의무를 삭제하며, 에너지수급 안정 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표 근거를 마련하고, 헌법기관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의무 대상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안 제2장).

셋째, 현행법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근거를 신설하였음(안 제3장).

넷째, 현행법 제3장부터 제5장까지를 통합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산업·건물 관련 시책(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등 관련 시책(제2절), 수송 관련 시책(제3절), 열사용기자재 관리(제4절) 등 4개의 절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음(안 제4장).

구체적으로는 ①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일원화,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실적 평가 및 결과 공표 근거 신설, ③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구체화 및 협약 이행실적 평가·공표 근거 신설, ④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 신설, ⑤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신설, ⑥ 미활용 열에너지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 신설, ⑦ 목표에너지원단위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 ⑧ 효율관리기자재 관련 의무사항 면제기준 신설, ⑨ 고효율기자재 인증 유효기간 명시, ⑩ 대기전력시험기관 등 시험기관 자격요건 강화, ⑪ 자동차·타이어 등 수송 관련 대책 신설 등이 있음.

다섯째, 현행법 제6장부터 제8장까지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보칙' 및 '벌칙'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보칙에 에너지절약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며(안 제70조), 그 밖에 수수료, 청문, 권한 위임·위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음(안 제5장부터 제7장까지).

<u>개정안의 주요 내용</u>

구 분	주요 내용
총칙 (제1장)	◦ 목적 및 책무 규정에 국내외 환경·규범 변화(온실가스 감축 강화) 반영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2장)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 ◦ 에너지사용자·공급자에 대한 에너지저장의무 삭제 ◦ 에너지수급 안정 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표 근거 신설 ◦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의무 명확화

구 분	주요 내용
	◦ 정부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의무 부여 ◦ 정부의 에너지캐시백 제도 추진 근거 신설
에너지공급자에 관한 조치 (제3장)	◦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공표 근거 신설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제4장)	◦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일원화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업실적 평가 및 결과공표 근거 신설 ◦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구체화 및 협약 이행실적 평가·공표 근거 신설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 신설 ◦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신설 ◦ 미활용 열에너지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 신설 ◦ 목표에너지원단위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 ◦ 효율관리기자재 관련 의무사항 면제기준 신설 ◦ 고효율인증의 유효기간 명시(4년) ◦ 대기전력시험기관 등 시험기관 자격요건 강화 ◦ 자동차·타이어 등 수송 관련 시책을 별도의 절로 분리
한국에너지공단 (제5장)	◦ 현행 제6장(한국에너지공단) 내용 유지
보칙 및 벌칙 (제6장·제7장)	◦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근거 신설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절차 완료 전 공사 시행 사업주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목표에너지원단위 이행계획 미제출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거짓 등의 방법으로 효율관리기자재 의무사항을 면제 확인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 칙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하에서는 개정안 조문의 순서대로 신설 또는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취지·효과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함.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총칙(안 제1장)

안 제1장(제1조～제3조)은 '총칙'으로 법률의 목적, 정의, 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조의 구성 및 위치는 현행법과 동일함.

1) 목적, 정의 및 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u>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u>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u>지구온난화의 최소화</u>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u>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u>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u>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u>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 2.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 2.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현 행	개 정 안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 설>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에너지효율 향상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에너지사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현 행	개 정 안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기자재, 제28조에 따른 에너지관련기자재 및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률의 주요 목적으로 변경하고 있음.

이는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 이행 강화라는 국내외적 환경 및 규범의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국제사회 발전이라는 포괄적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목적 규정에서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6)]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한편, 현행법은 에너지절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7] 해당 조항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약칭하고 있으나,[8] 그 역할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역할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자주 사용되는 용어[9]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 설명하여 둠으로써 법문 표현의 간결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및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9) 개정안은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72조, 제74조 및 제75조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언급하고 있음.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조치 등(안 제2장)

안 제2장(제4조～제9조)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실시계획, 수급안정 조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에너지이용 합리화 교육·홍보, 금융·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10)]

1)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주기 명시 및 계획 포함 사항 구체화 등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원간 대체(代替)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부문별 대책 2.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10) 개정안은 현행법 제2장에서 규율하고 있는 수요관리투자계획(제9조)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10조～제12조)에 관한 사항을 각각 안 제3장 및 제4장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제5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현 행	개 정 안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과 시행 결과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4조는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11](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매 5년으로 명시하고, ② 기본계획 포함사항을 실제로 수립되는 내용에 맞춰 수정·보완하는 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12]에 규정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법률로

11) 현행 기본계획은 제6차 계획(’20년~’24년)이며, 에너지 수요 측면의 중장기 실행전략으로서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목표, 비전 및 추진과제 등이 제시되어 있음.
 * (1차) ’93~’97, (2차) ’99~’03, (3차) ’04~’08, (4차) ’08~’12, (5차) ’13~’17

상향하여 정부의 5년 주기별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현행법은 기본계획에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에너지원간 대체, 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 가격예시제의 시행, 온실가스 저감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예시제[13]는 사문화된 사항이고, 실제 수립되는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법률에 규정된 개별 사항들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위상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률 규정과 실제 제도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기본계획 포함 사항 비교

현행법상 기본계획 포함사항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포함사항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1.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부문별 대책
3.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2.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연도별로 에너지원별 목표가격을 미리 고시하는 제도로, '97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음.

현행법상 기본계획 포함사항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포함사항
<신 설>	3.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원간 대체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안 제1호 및 제5호를 통해 포섭
<신 설>	5.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사문화 규정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편, 안 제5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할 때, 현행법과는 다르게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14](이하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14) 「에너지법」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법 시행령」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 외교부 / 4. 환경부 / 5. 국토교통부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입법례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절차 이행의 신속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2) 에너지저장의무 삭제 및 수급안정 조치 미이행자 명단 공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삭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있는 단체로 한다.
1.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 2.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3.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4.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업
5.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현 행	개 정 안
1. 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2.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4. 에너지의 도입·수출입 및 위탁가공 5. 에너지공급자 상호 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6. 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7. 에너지의 배급 8. 에너지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9. 에너지사용의 시기·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에너지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2.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4. 에너지의 도입·수출입 및 위탁가공 5. 에너지공급자 상호 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6. 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7. 에너지의 배급 8. 에너지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9. 에너지사용의 시기·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에너지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조정·명령, 조치(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의 명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치등을

현 행	개 정 안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① 에너지저장의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삭제

현행법 제7조제1항 및 제72조제1호는 에너지의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 의무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5]

그런데 현행법 제7조제2항제3호[16] 및 제72조제2호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하여 에너지 비축·저장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동 의무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15)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동 규정에 근거하여 에너지저장의무가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정하고 있음.

또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탄산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의 개별법에도 이미 각 사업자에 대한 에너지 비축 의무가 규정[17]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사용자·공급자에 대한 에너지저장시설 보유 및 에너지저장 의무 부과와 동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여 규정의 중복을 해소함으로써 법체계를 간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에너지수급 안정 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표

안 제6조제3항은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조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에너지수급 안정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 및 기관 등의 명단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17) 에너지공급자 대상 수급 안정 조치와 관련한 개별법의 규정은 [참고 1] 참조

다만, 에너지수급 안정 조치 처분을 받은 자는 불복절차를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공표 대상 결정 시 신중을 기하기 위해 공표의 사전심의 절차로서 심의위원회를 두거나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18]

---

18) <유사 입법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미이행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3회 이상 작성한 자를 말한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명단 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내용 및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등의 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1. 국가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추진한 조치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거나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조치의 내용, 추진실적 평가 또는 실태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현행법 제8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19]에 대해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21]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국가·지자체·공공기관) 중 '국가'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은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실질적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22]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23.1.기준)된 기관은 총 347개 기관(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 공공기관 260개)임.

20)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1)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기관은 [참고 2] 참조

2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를 상대로 에너지용 효율화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삼권분립과 기관 자율성을 침해할 우

동 규정은 이와 함께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시·도 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립병원, 국·공립학교 등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기관으로 포함하고 있음.

국회·법원 등의 헌법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고효율 기자재 구매·도입, 친환경 차량 구매, 냉·난방온도 제한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가 행정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 비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고,

시·도 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립병원, 국·공립학교 등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와 관련한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이었던 '국가' 대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로 명시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으로

려가 있고, 실제로 규범력이 행사되기 어려운 측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해 헌법기관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그 밖에 공공부문이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기관임을 명확히 하여 해당 조치의 이행과 탄소중립 실천에 모범을 보이도록 함으로써 국민들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공부문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해 헌법기관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기관임을 명확히 하여 해당 조치의 이행과 탄소중립 실천에 모범을 보이도록 함으로써 국민들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기관 비교

현행법	개정안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① 국가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총리 소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국회·법원·헌재·선관위	① 중앙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② 지방자치단체	② 지방자치단체

현행법	개정안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④ 시·도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립병원, 국립·공립 학교 등

다만, 개정안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는 해당 기관의 소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추진 계획과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평가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추진실적 및 이행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평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3]

2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한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태점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언론 공표는 기관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실적 및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임.[24]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태점검 및 결과 공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헌법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원칙 및 헌법기관의 독립성·자율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25]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점검 및 공표하도록 함으로

2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한 평가·점검 및 결과공표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규정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 공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25) 제20대 국회에서 국회·법원 등의 헌법기관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기관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06224호, 송옥주의원 등 20인)이 논의되었으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폐기하기로 의결된 바 있음.

써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하는 것에 동의하나, 실태 점검 및 결과 공표가 국가안보·국방·통일 등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한편,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26]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정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홍보)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와 국민 등의 자발적 참여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천에 필요한 경우 관련

26) 개정안과 유사하게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인 '국가'를 '국가기관'으로 변경하고 '국가기관'은 '국회·법원·헌재·선관위'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을 뜻하는 것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임(의안번호 제2204337호, 2024. 9. 26. 발의).

현 행	개 정 안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와 국민 등의 자발적 참여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 가정용·상업용·산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금융·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안 제8조는 정부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도록 명시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단체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전기·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인 에너지캐시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해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시키고, 에너지캐시백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안 제9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비과세·감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와 배치되며, 개별법에 재량규정이 반영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는 세제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국민의 불필요한 기대와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다. 에너지공급자에 관한 조치(안 제3장)

안 제3장(제10조)은 '에너지공급자에 관한 조치'로, 현행법 제2장에서 규율하고 있는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되,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1)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공표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과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연	제3장 에너지공급자에 관한 조치 제10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과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연

현 행	개 정 안
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시행 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해당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

스배출의 감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계획과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28]에서는 수요관리투자계획과 투자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근거를 법률로 이관하면서 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에 대해서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요관리투자계획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일관성 있게 법률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서는 에너지공급자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해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등은 동 계획에 따라 효율향상·부하관리·기반조성 등의 수요관리투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수요관리투자사업의 구분

구 분		내 용
수요관리 투자사업	효율향상	(자체대상) 공급자 자체 설비의 효율향상 도모사업
		(고객대상) 고객 설비의 효율향상 도모사업, 에너지사용자 행동변화 사업(EERS)
	부하관리	최대부하 억제 및 기저부하조성 등 부하 분산·평준화 사업
	기반조성	홍보·교육, 연구개발, 출연사업 등을 통한 효율향상 및 부하관리 인프라조성 사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8)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71호)
제12조(투자계획의 검토 및 평가 등) ① 관리기관은 에너지공급자의 투자계획을 검토한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결과의 검토 및 평가 등) ① 관리기관은 에너지공급자의 시행결과를 검토한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안 제4장)

안 제4장(제11조～제52조)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으로, 현행법 제3장부터 제5장까지를 통합하여 1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시책(제2절), 수송 관련 시책(제3절) 및 열사용기자재의 관리(제4절) 등 4개의 절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1)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의 일원화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제1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	② 사업주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산업통

현 행	개 정 안
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 중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주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 중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사업주관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주관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및 의견청취의 절차, 대행기관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절차, 대행기관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수급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감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수급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조정·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바에 따라 사업주관자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② 사업주관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공사 등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 또는 시설공사 등에 관련되는 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관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관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검토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검토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	제13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악할 수 있다.	
<신 설>	② 사업주관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실태파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 및 증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제3항에 따른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실태파악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점검이나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신 설>	5. 제12조제2항에 따른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그 사업등의 공사를 시행한 사업주관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8.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관자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주관자에게 에너지사용계획[29]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사업주관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협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간사업주관자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 후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음.[30]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의 도입(1992년) 초기에는 공공부문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민간부문으로 에너지사용계획 제출 의무를 확대 적용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1조(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 2.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 3. 에너지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4. 에너지 소비가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5.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방안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감소 방안
7. 사후관리계획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0)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의 개요는 [참고 4] 참조

(2002년)한 이후 민간부문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건수가 점점 증가하여 2012년부터는 전체 건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완료 건수

(단위: 건, %)

구 분	'93~'11	'12	'16	'20	'21	'22
공공사업주관자	695	45	29	42	28	30
민간사업주관자	335	83	61	58	70	54
합 계	1,030	128	90	100	98	8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개정안은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해서도 공공사업주관자와 동일하게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의무를 부여하고,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절차상 이원화되어 있던 공공·민간부문의 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해 민간 주도 사업의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조정·보완 요청 또는 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 시행의 금지로 인해 공사비가 상승하

거나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한 규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한편,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항을 이관하는 것으로 이는 안 제11조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제11조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실적 평가 및 결과 공표 등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제14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

현 행	개 정 안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내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내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제2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등록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등록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신 설>	제1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 ①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의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 에너지절약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2.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채무 보증 및 융자 3. 에너지절약사업 수출을 위한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한 보증 4.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팩토링 5. 에너지절약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6.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7. 조합원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채무 보증 및 융자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출을 위한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한 보증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팩토링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6.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7. 조합원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③ 제2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공제규정에 포함할 공제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이란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되기 위한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로서 에너지사용자로부터 기존의 에너지사용시설을 고효율로 대체·개조·보완하는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당 기업들의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수요자들이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에너지절약전

문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내용 구체화 및 협약 이행실적 평가·공표 등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개선에 관한 목표 및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에너지사용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② 정부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투자에 필요한 시설자금 또는 세제 지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주기 연장 또는 면제 3. 자발적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지원 4. 친환경 기업 평가와 관련한 인센티브 및 기업 홍보 지원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발적 협약 체결의 현황과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자발적 협약의 대상, 목표, 이행방법, 실적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원단위(energy basic unit)는 에너지 소비량을 생산량 또는 매출액 등으로 나눈 비율로 에너지효율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고, 에너지원단위 관리 정책은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감축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해외의 주요국[31]들은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감축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원단위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산업부문의 에너지원단위를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다소비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제도(한국형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KEEP30[32])를 시행하여, 협약에 따른 개선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한국형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 개요

□ **대 상** : 연간 20만 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30개 기업(39개 사업장) * 누구나 참여가능하나, 20만 toe 이상의 대형사업장 보유한 30개 기업 우선적 참여 유도 □ **내 용** : 산업부문 다소비 기업 대상 에너지효율혁신 자발적 협약 체결하여 에너지원단위 등 개선목표 설정, 달성여부 평가 및 검증, 인센티브 지원 ○(목표설정) 직전 5년간 원단위 개선율을 기반으로 동일업종 원단위추이, NDC 목표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개선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 ○(협약체결) 탄소중립과 효율혁신 중장기 비전, 효율혁신 목표(원단위, FEMS 및 제로에너지 빌딩 등 인프라 투자)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 달성 시 인센티브 등

31) 독일은 산업계가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를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일본은 5년간 에너지원단위 1% 개선의무를 부여하고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32) 한국형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 Korea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30): 정부는 30대 에너지다소비 기업(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약 60%)과 5년간('23~'27) 연평균 에너지원단위 1% 개선협약을 체결('22.10.)하였음.

○(성과검증) 연도별 이행실적 평가체계 구축

실적제출		서면검토		현장검증		인증위원회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활용	→	신고서 데이터 검토 등	→	인프라 투자 실적 등 현장검증	→	검증결과 인증 및 결과 대외발표

○ (인센티브) K-ESG 인증, 결과공표, 포상, 정부 지원 우대 등 지원(안) 지속 발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현행법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33]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34] 자발적 협약 참여자의 이행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이를 공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3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체결 전년도의 에너지소비 현황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 부가가치 등의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목표 또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이하 “효율향상목표 등”이라 한다) 및 그 이행 방법
3. 에너지관리체제 및 에너지관리방법
4. 효율향상목표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5. 그 밖에 효율향상목표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2. 계획 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3.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4. 그 밖에 에너지절감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34) 정부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들과 체결한 KEEP30 협약에는 이행결과 평가 및 평가 결과의 대외 공표가 포함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발적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발적 협약체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민간의 협약 참여 및 에너지효율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자발적 협약 이행실적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협약 참여 기업에 대해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은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35)]

4)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제19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제

35) 개정안 제19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 한전 등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 공급량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19조에 해당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협약 이행실적의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가 필요해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품생산량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품생산량과 해당 연도의 분기별 예정량 2.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3. 전년도의 공정·제품별 에너지사용량과 해당 연도의 예정량 4.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현황 및 배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라고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주기별·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20조제3항에 따라 받은 에너지진단의 결과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에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제3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현 행	개 정 안
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해당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현행법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36]로 하여금 매년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및 에너지사용기자재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광역 지자체의 장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연간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건물·수송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2024년(2023년 실적) 기준으로 총 5,128개 사업장이 있으며, 동 사업장에서 총 1억 1,164만 5,000toe를 신고하여 국내 최종소비량의 4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u>에너지사용량 통계</u>

(단위: 천toe, %)

구분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계		
	전산업 (A)	신고 업체	점유율	전건물 (B)	신고 업체	점유율	전수송 (C)	신고 업체	점유율	국내총 (A+B+C)	신고 업체	점유율
'20	137,964	98,744	71.6	45,163	2,823	6.3	39,436	2,778	7.0	222,563	104,345	46.9
'21	148,023	104,233	70.4	46,633	2,948	6.3	40,010	2,841	7.1	234,665	110,022	46.9
'22	147,477	102,691	69.6	48,781	3,179	6.5	40,097	2,879	7.0	237,165	108,749	45.9
'23	144,482	105,495	72.8	47,292	3,239	6.8	41,211	2,910	7.1	233,325	111,645	47.8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개정 전 에너지밸런스('24.7.)

3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란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그런데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의 주기가 분기에 한정되어 있는바, 정부에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실시간 에너지 사용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면밀한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에너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신산업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37]

이에 개정안 제19조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 설비현황 및 에너지진단 결과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정보체계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등의 수요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시의성 있는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지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37) 참고로, 미국의 경우 에너지공급자가 보유한 에너지소비 데이터에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쉽게 접근하여 활용 가능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인 그린버튼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에너지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의 에너지공급자에 대해 에너지공급량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개정안은 자료제출에 대한 요청[38]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음.

이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는 점을 감안한 취지로 이해되나,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에너지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 제19조제2항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신고받은 에너지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발의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는 것으로 개정(2024. 9. 20.)한 바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38) '요구'는 요구하는 쪽에 권리가 있는 경우 적절한 용어로 동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행동을 청한다는 점에서 '요청'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후단을 통해 사실상 차이는 없을 것임.

5)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에너지진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제1항의 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아파트·발전소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아파트·발전소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아닌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진단기관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 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을 관리·감독한다.	(안 제22조제2항에 규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현 행	개 정 안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2조제1항에 규정)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분리하여 규정)
<신 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진단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⑧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21조제1항에 유사내용 규정)
⑨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신	제21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진단기

현 행	개 정 안
설>	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기술인력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진단을 하는 경우 3. 제32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단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2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진단을 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단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신 설>	7.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자진하여 지정 취소를 신청한 자는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현 행	개 정 안
	수 없다.
<신 설>	④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진단기관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 업무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진단기관의 평가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개선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개선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를 한 후 에너지 손실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현 행	개 정 안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현행 법령[39]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으로부터 3년 또는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받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관리기준을 미준수한 에너지다소비사

3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6조(에너지진단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에너지진단주기”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에너지진단주기(제36조제1항 관련)

연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진단주기
20만 티오이 이상	1. 전체진단: 5년 / 2. 부분진단: 3년
20만 티오이 미만	5년

비고
1.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진단을 하는 연도의 전년도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티오이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0만 티오이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에너지진단(이하 “부분진단”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1개 구역 이상에 대하여 부분진단을 한 경우에는 에너지진단 주기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부분진단은 10만 티오이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업자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를 실시하고,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손실 요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너지손실 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진단 제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총 7,741개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 총 5만 7,315건의 개선안이 도출되었으나 실제 개선이행률은 45.2%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개선사항이 도출되더라도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의무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명령도 실효성이 제한적인바, 개선안의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에너지진단에 따른 개선이행률

(단위: 개소, 건, %)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계
대상 사업장	383	420	559	545	469	546	563	625	825	789	682	627	708	7,741
조사 사업장	380	421	552	534	463	531	553	603	795	780	661	615	698	7,586
진단 개선안	3,503	4,012	5,213	4,904	4,029	4,329	4,025	4,340	5,211	5,269	4,341	3,701	4,438	57,315
이행 개선안	1,242	1,764	2,221	2,019	1,802	2,008	1,919	2,076	2,503	2,350	1,988	1,791	2,220	25,903
이행률	35.5	44.0	42.6	41.2	44.7	46.4	47.7	47.8	48.0	44.6	45.8	48.4	50.0	45.2

주1) 폐업·이전 등의 사유로 조사 불가 업체(155개소) 제외
주2) 이행실태 조사는 진단 완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실시하며, '20~'22년 대상사업장은 조사 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곧바로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에너지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에너지진단을 통해 도출된 에너지절감 개선방안의 이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개정안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가 자진하여 지정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진단기관 지정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 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진단기관 지정취소 시 재지정 제한기간을 둠으로써 진단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조문 정비를 통해 법률의 체계성 및 가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미활용 열에너지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

현 행	개 정 안
제36조(폐열의 이용) ①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24조(미활용 열에너지의 사용) ①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열에너지를 사용하기 위

현 행	개 정 안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미활용 열에너지를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촉진이 필요한 미활용 열에너지의 범위와 유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활용 열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활용 열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미활용 열에너지의 공동사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활용 열에너지의 공동사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각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각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미활용 열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활용 열에너지 정책 수립과 신산업 발굴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체계(이하 “미활용 열에너지 정보체계”라고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활용 열

현 행	개 정 안
	에너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14. (생 략) <신 설>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8. (생 략) 9. 제24조제4항에 따른 미활용 열에너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0. ~ 19. (생 략)

탄소중립 노력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지구 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발전·산업 부문 폐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의 재활용·회수 등을 통한 지구 온도 상승 저감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40]

현행법은 폐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열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폐열 등 미활용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미활용 열에너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근거 조항도 부재한 상황임.

4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직접적 지구 온도 저감 방안(출처: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회의원 김정호)

이에 개정안은 ‘폐열’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열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아직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폐열’에서 ‘미활용 열에너지’로 변경하고 그 범위와 유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해 미활용 열에너지의 활용 확산을 도모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개정안은 미활용 열에너지 정책 수립과 신산업 발굴 지원을 위해 ‘미활용 열에너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활용 열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활용 열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가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목표에너지원단위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 등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목표에너지원단위가 고시된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목표에너지원단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가 고시된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목표달성 및 원단위 개선과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를 달성하거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목표에너지원단위가 고시된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및 이행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5항에

현 행	개 정 안
	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목표에너지원단위와 그 이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	제26조(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등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건물: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 2. 제1항제2호의 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통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건물: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 2. 제1항제2호의 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

현 행	개 정 안
다)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정하는 기준 및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정하는 기준 및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8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25조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을 한 자

현행법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1]

그러나 현행법은 목표에너지원단위를 관리하기 위한 의무부과 규정이 부재하고,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자금융자만 규정하고 있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건축물의 경우 그 수가 많고 용도별 특성이 다양하여 일괄적인 관리가 어려워 목표에너지원단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효율개선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로 인해 건물주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① 목표에너지원단위 이행계획 및 그 실적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②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목표에너지원단위와 그 이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광역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목표에너지원단위 제도의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 등의 에너지소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41)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별 특성에 적합한 목표에너지원단위를 설정·관리하고 그 이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23.12.28.~'24.01.19.)를 실시하였음.

다만, 건축물과는 다르게 산업부문의 경우에는 대상 제품과 각 제품에 수반되는 제조공정 및 에너지사용 설비 등의 제반 조건이 상이하여 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목표에너지원단위를 정하여 고시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정안이 반영되더라도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규범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 제25조제2항에서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42]의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26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변경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에너지 수급위기에 대응하

42) 개정안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 표기하고 있음.

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용도가 아닌 에너지사용량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8)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등록·관리 등의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①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등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등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① 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계종사자 등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와 교육훈련 내용,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지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9.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개정안은 현행법 제2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출실적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동 규정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43]이 시행되었으나,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환경부 소관)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고 관련 고시도 폐지[44]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하여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함께 동 조항에 근거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등록이 종료(2016년 12월)되어

4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KVER):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평가 후 등록하고, 사업유효기간(5년) 동안 검증한 감축실적에 대해 정부 인센티브 지원('05~'16)

44)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05.10. 제정 → '16.12. 폐지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07.02. 제정 → '16.12. 폐지

조항의 삭제는 가능하나, 동 조항을 근거로 한 16개 감축방법론이 배출권거래제에서 유효하게 인정받고 있는바,[45] 동 조항 삭제 후에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현행법 제30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음.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한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교육훈련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과 관련한 사항이 환경부 소관의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46]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4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7조제4항제1호에서 증빙자료의 포함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1. 해당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적용된 방법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 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의 방법론에 한한다**)"

46) 「온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중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기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 관련 업무의 총괄 부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부처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교육훈련 사업과는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존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108

9) 효율관리기자재 관련 의무 면제기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제2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 사용량의 기준	제2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 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

현 행	개 정 안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 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	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

현 행	개 정 안
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출을 목적으로 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는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효율관리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연구·개발, 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효율관리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제2항에 따른 측정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효율관리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현 행	개 정 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수수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단서 신설>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신 설>	2. 제28조제6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적용 면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6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적용 면제의 확인을 받은 자

현행법은 효율관리기자재[47]의 제조업자·수입업자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등급 또는 소비효율을 의무적으로 표시·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됨.

그러나 국내에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수출용 기자재 및 연구·개발,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해서까지 효율등급 등의 표시·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내 소비자의 에너지

47) 효율관리기자재: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된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 및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지만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

절약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효율관리기자재 구분 및 대상품목(34종)

구 분			품 목
효율관리기자재(34종)	에너지사용기자재(33종)	소비효율등급표시 대상(18종)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텔레비전수상기,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의류건조기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15종)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셋톱박스, 전기레인지, 사이니지디스플레이, 냉동기, 공기압축기, 모니터
	에너지관련기자재(1종)	소비효율등급표시 대상(1종)	창세트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	-

주1) 소비효율등급: 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을 표시하고, 최저기준(5등급)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 금지
주2) 최저소비효율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대상으로 별도 라벨을 부착하고,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 금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개정안은 수출, 연구·개발 및 전시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해서는 효율 표시·신고 등 의무사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효율관리기자재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제81조제2호)은 부정한 방법으로 효율관리기자재 관련

의무사항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기자재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국내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 제28조제6항에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 제81조제2호는 벌칙의 대상으로 “제28조제6항에 따른 적용 면제의 확인을 받은 자”로 문구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제28조제6항 부분을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0) 시험기관 관리 강화 및 고효율인증 유효기간 명시 등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	제29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28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

현 행	개 정 안
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기자재가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효율관리기자재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하 “대기전력”이라 한다)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저감기준 3. 대기전력의 측정방법 4.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저	제30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하 “대기전력”이라 한다)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저감기준 3. 대기전력의 측정방법 4.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저

현 행	개 정 안
감우수제품”이라 한다)의 표시 5. 그 밖에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감우수제품”이라 한다)의 표시 5. 그 밖에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표시 3. 그 밖에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30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표시 3. 그 밖에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

현 행	개 정 안
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해당 제품이 제30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⑤ 제2항의 대기전력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제32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현 행	개 정 안
하려면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 할 수 있다.	하려면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제30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30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 행	개 정 안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	제34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

현 행	개 정 안
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 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 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은 「국

현 행	개 정 안
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중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중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	제35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

현 행	개 정 안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의 인증 취소 및 사용중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제15조제5항,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7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6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제28조제5항, 제31조제5항 또는 제34조제7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8조제2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고효율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정 또는 승인을 할 수 없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 또는 승인 취소와 시험업무 또는 자체측정업무의 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사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및 공사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붙박이 가전제품(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이하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소비효율등급 또는 대기전력 기준 3. 그 밖에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74조(벌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

현 행	개 정 안
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한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 <신 설>	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6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적용 면제의 확인을 받은 자 3. 제31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한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현행법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48]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은 인정기관이 아니더라도 시험기관으로

48)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지정받을 수 있는바, 시험기관별 가격요건이 상이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및 시험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이 취소된 시험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u>시험기관별 자격요건</u>

구 분	지정목적	지 정 요 건
효율관리 시험기관 (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	<u>인정기관으로서</u>, ①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③ 위 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
대기전력 시험기관 (제19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 제품의 대기전력저감 기준 적합 여부 측정	①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③ 인정기관, ④ 위 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고, 대상제품별로 고시하는 시험설비·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
고효율 시험기관 (제22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	①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③ 인정기관, ④ 위 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인증대상기자재별로 고시하는 시험설비·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

이에 안 제31조제5항 및 제34조제7항은 인정기관 중에서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이 취소된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험기관에 대한 가격요건과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기자재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한 효율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34조제4항은 고시[49]에 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대상 품목(23종)

분 야	품 목
전력설비(8종)	무정전전원장치, 인버터, 펌프, 원심식 송풍기, 터보압축기, 전력저장장치(ESS),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7종)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스크류 냉동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항온항습기, 가스히트펌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조명설비(5종)	LED유도등, 문자간판용 LED모듈, 등기구, LED램프, 스마트LED조명
단열설비(3종)	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 금속제 커튼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은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이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50]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49) 현행법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은 고효율기자재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5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설비·기기를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고효율제품 보급을 촉진하고, 제조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은 건설업자가 설치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붙박이 가전제품(이하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 기준과 관련한 규정(현행법 제35조의2)을 삭제하고 있음.

에어컨(전기냉난방기), 전기레인지, 냉장고 등 주요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는 이미 효율관리기자재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 체계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수송 관련 시책의 분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절 수송 관련 시책
<신 설>	제37조(자동차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송과 관련된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자동차용 타이어(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현 행	개 정 안
	측정방법 6. 그 밖에 자동차등의 효율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동차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연비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해당 자동차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연비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자동차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자동차등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연비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

현 행	개 정 안
	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신 설>	제38조(자동차등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동차등이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자동차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동차등이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동차등이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자동차등이 제3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등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연비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비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제37조제5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제40조(자체측정 승인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인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측정의 승인취소와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그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이 조에서 "평균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41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그 자동차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평균효율관리대상자동차"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삭 제>
④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한 판매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평균효율관리대상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미달성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	제42조(과징금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평균효율관리대상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선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미달성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에 따른다. ③ ~ ⑤ (생 략)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자동차등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7.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8. 제39조에 따른 연비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9. 제40조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 행	개 정 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6.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비시험기관의 지정, 자체측정의 승인 및 자동차등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제74조(벌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8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③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7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현 행	개 정 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7.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4.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현행법은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등의 수송부문은 사업장별 에너지소비량의 추정이 어렵고, 수송 수단별로 사용하는 연료가 다양하여 일반적인 기자재와 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자재와 함께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여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효율관리기자재의 하나로서 관리되고 있던 자동차 및 자동차용 타이어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 기자재 시책'에서 분리하여 '수송 관련 시책'으로 규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산업·건물·기자재·수송의 각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향후 자동차 외에 차세대 수송부문(육상·해상·항공 수송수단 등)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

화 제도를 포괄할 수 있는 별도의 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 제37조제5항에서는 '연비시험기관'[51]을 정하면서 현행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규정[52]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라는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있고, 개정안 제38조에서는 자동차등의 사후관리(시정·판매금지) 의무대상자로서 기존 의무대상자[53] 중 판매업자를 제외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만 포함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시험기관과 관련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라는 자격요건은 동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른 시험기관(효율관리·대기전력·고효율시험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므로 동 자격요건

---

51) '연비시험기관'은 자동차 외에 자동차타이어에 대해서도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실시하므로 '수송효율시험기관'과 같이 이를 포괄하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5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5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사후관리 의무 대상자와 관련하여 제조업자·수입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판매업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2)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4절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37조(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시공이나 세관(洗罐 : 물이 흐르는 관 속에 낀 물때나 녹따위를 벗겨냄)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3조(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시공이나 세관(洗罐 : 물이 흐르는 관 속에 낀 물때나 녹따위를 벗겨냄)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또는 세관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또는 에너지효율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면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3조에 따라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또는 세관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또는 에너지효율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면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5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⑧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⑧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	제46조(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현 행	개 정 안
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제47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현 행	개 정 안
야 한다.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야 한다.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내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48조(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내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5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장 시공업자단체	<삭 제>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① 시공	제49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① 시공

현 행	개 정 안
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시공 방법 개선, 그 밖에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시공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시공 방법 개선, 그 밖에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시공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50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3조(건의와 자문) 시공업자단체는 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정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51조(건의와 자문) 시공업자단체는 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정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44조(「민법」의 준용)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민법」의 준용)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안 제4장제4절(제43조～제52조)은 '열사용기자재의 관리'로, 현행법 제4장(열사용기자자의 관리) 및 제5장(시공업자단체)을 통합하여 1개의 절로 구성하되, 조문 내용 및 순서는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에 관한 사항과 시공업자단체에 관한 사항은

모두 열사용기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정으로 보임.

마. 그 밖의 사항(안 제5장～제7장)

안 제5장부터 제7장까지(제53조～제84조)는 각각 한국에너지공단, 보칙 및 부칙으로, 보칙에 에너지절약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는 외에 그 밖의 사항은 현행법의 조문 순서와 내용 등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전부개정에 따른 수수료, 청문, 권한 위임·위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음.

전부개정에 따라 신규로 반영하거나 삭제한 사항과 관련한 주요 보칙 및 벌칙 규정은 앞선 조문별 검토에서 이미 서술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및 보칙에 신설되는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에 대해서만 논의함.

1) 한국에너지공단

현 행	개 정 안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한국에너지공단 제53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54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8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에 관한 사항 4.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56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에 관한 사항 4.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49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임원)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장,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9명 이내(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명	제59조(임원)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장,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9명 이내(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명
제5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6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5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6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국제협력 2.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5.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제62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국제협력 2.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5.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현 행	개 정 안
7.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8.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10. 에너지사용기자재·에너지관련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11.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7.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8.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10. 에너지사용기자재·에너지관련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11.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제58조(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자금의 차입) 공단이 제57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64조(자금의 차입) 공단이 제6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60조(회계 등)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5조(회계 등)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사업실적 및 결산 3. 제57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4. 제6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사업실적 및 결산 3. 제62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4. 제75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안 제5장(제53조～제59조)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현행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에너지공단은 현행과 같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진단, 집단에너지사업 지원·관리, 에너지사용기자재 등의 효율관리,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됨.

2)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현 행	개 정 안
제7장 보칙	제6장 보칙
<신 설>	제70조(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 이용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히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5조(교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	제71조(교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

현 행	개 정 안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담당기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담당기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자동차등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단서 신설> 2.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신 설>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2. 제28조제6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

현 행	개 정 안
	재 적용 면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
1.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3.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3. 제3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4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5. 제46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68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6.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다만,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3. 제29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4. 제35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5. 제36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6.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신 설>	7.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신 설>	8. 제39조에 따른 연비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신 설>	9.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현 행	개 정 안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1.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2.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1.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감독 12의2.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신 설> 12의3.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2. 제1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3. 제13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삭 제> 5.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감독 8. 제2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9. 제24조제4항에 따른 미활용 열에너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0. 제26조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현 행	개 정 안
3.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11.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 자체측정의 승인 및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4.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12.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 및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13.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6.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14.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정지 명령	15. 제35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정지 명령
<신 설>	16.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비시험기관의 지정, 자체측정의 승인 및 자동차등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13.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	17.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
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18.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14. 제40조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19. 제47조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	제7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75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

현 행	개 정 안
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삭 제>(제11조제2항 단서로 이동)
제8장 벌칙	제7장 벌칙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에 따른 조정·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6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에 따른 조정·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6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5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3.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제74조(벌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생산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현 행	개 정 안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벌칙)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한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 <신 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6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적용 면제의 확인을 받은 자 3. 제31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한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 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신 설>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

현 행	개 정 안
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 <신 설>	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삭 제> 2. 제7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 2. 제37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관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협의절차가

현 행	개 정 안
	완료되기 전에 그 사업등의 공사를 시행한 사업주관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6. 제12조제4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6.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7. 제13조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신 설>	8.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관자
9.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9.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신 설>	10. 제25조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을 한 자
9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26조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3.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27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	13. 제32조제3항 또는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4.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9의4. 제39조제7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5. 제45조제7항 또는 제4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0. 제50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	16. 제58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

현 행	개 정 안
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7.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정부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으나,[54] 포상과 관련한 법률의 근거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에너지효율향상 유공자 포상 현황

(단위: 건)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85	80	78	72	78
훈 장	2	2	2	2	2
포 장	2	2	2	2	1
대통령	7	6	6	5	5
총 리	9	8	8	7	8
장 관	65	62	60	56	62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54) 정부의 에너지효율향상 유공자 포상은 1975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까지 총 45회 개최하였음.

이에 안 제70조는 에너지절약에 공이 현저히 큰 개인이나 단체를 유공자로 선정·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에너지절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라는 점에서 포상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유사 입법례[55]와 같이 포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468

55)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4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제25조(포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1 개별법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대상 수급 안정 조치

「전기사업법」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량의 한도 / 2. 사용 용도 / 3. 사용 제한 기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제한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스 공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석탄산업법」

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석탄의 생산량과 석탄가공제품의 종류 및 생산량에 관한 조정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비축과 저탄(貯炭)시설에 관한 조정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조정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지역적 유통에 관한 조정
5. 발전용 석탄의 사용량에 관한 조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공급의무 등) ①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열생산자는 제19조에 따라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열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중(公衆)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교체·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참고 2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계획 · 실적 제출 대상기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제출대상 기관은 지청(지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2.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통계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3.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대상항목 중 정부합동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실적을 총괄하여 제출한다.

4. 당해연도 제출대상기관 중 신규지정, 지정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3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 현황

□ **(개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효율향상, 수요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제도 운영

□ **(법적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동법 시행령 제16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산업부고시)

□ **(대상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구분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효율향상	ㅇ자체설비효율향상사업 (고효율변압기, AMI)	-	-
	ㅇ고객설비효율향상사업('18년부터 EERS시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별도 관리 중)		
부하관리	ㅇ건물냉난방 원격관리 ㅇ최대전력관리장치 ㅇ축냉설비 ㅇ긴급절전	ㅇ산업용 요금할인 ㅇ냉방용 평균공급가 할인 ㅇ가스냉방 설치	ㅇ지역냉방요금 할인
기반조성	ㅇ수요관리 홍보 ㅇ사업운영 등	ㅇR&D, 절약 홍보 등	ㅇR&D, 절약 홍보 등

□ **(투자현황)** '21년 4,754억원 → '22년 4,040억원 → '23년 8,000억원 규모

< 최근 3년 수요관리투자사업 현황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한전	가스공사	한난	한전	가스공사	한난	한전	가스공사	한난
효율향상 (자체설비)	2,400	-	-	1,595	-	-	5,144	-	-
효율향상 (고객설비, EERS)	382	34	16	325	27	18	710	73	10
부하관리	48	646	360	46	1,083	490	44	1,105	828
기반조성	14	110	30	13	56	28	10	57	19
합 계	2,844	790	406	1,979	1,166	536	5,908	1,235	857

< 수요관리투자사업 효과 >

구 분	2021			2022			2023		
	한전	가스공사	한난	한전	가스공사	한난	한전	가스공사	한난
효율향상	912 GWh	7 Tcal	12 Tcal	709 GWh	4 Tcal	21 Tcal	1081 GWh	34 Tcal	21 Tcal
부하관리 (△MW, Tcal)	21	13,955	629	27	13,813	736	28	3,881	819

* 효율향상은 절감실적 / 부하관리는 한전은 부하저감, 가스공사와 한난은 부하창출 실적

참고 4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요

□ **(내 용)**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개발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시 **사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 에너지수요예측, 절감방안 등에 대해 검토·협의과정을 거쳐 에너지사용계획서 보완

□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제26조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조～제6조
-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8-19호)
-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산업부 고시 제2023-6호)
-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한국에너지공단 내규)

□ **(협의대상)** **국토개발사업**(도시, 산단, 관광단지 등), **에너지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항만, 철도, 공항) 및 **시설**(건축물, 공장) 등

<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출 대상 사업 및 시설 >

구분	분 야 별	시 설 규 모	
		공공사업주관자	민간사업주관자
사업 부문	도시개발	· 개발면적 30만m^2이상	· 개발면적 60만m^2이상 - 물류단지는 40만m^2이상
	산업단지개발	· 개발면적 15만m^2이상	· 개발면적 30만m^2이상
	관광단지개발	· 관광시설 계획면적 30만m^2이상	· 관광시설 계획면적 50만m^2이상
	에너지개발	· (광산) 채광면적 250만m^2이상 · (발전설비) 발전용량 2만kW이상	좌 동
	항만 건설	· 하역능력 1백만ton/년 이상	좌 동
	철도 건설	· 선로길이 10km이상	좌 동
	공항 건설	· 개발면적 40만m^2이상	좌 동
시설 부문	**건축물**, 공장, 기타 시설	· 연료사용 2.5천toe/년 이상, 전력사용 1천만kWh/년 이상	· 연료사용 5천toe/년 이상, 전력사용 2천만kWh/년 이상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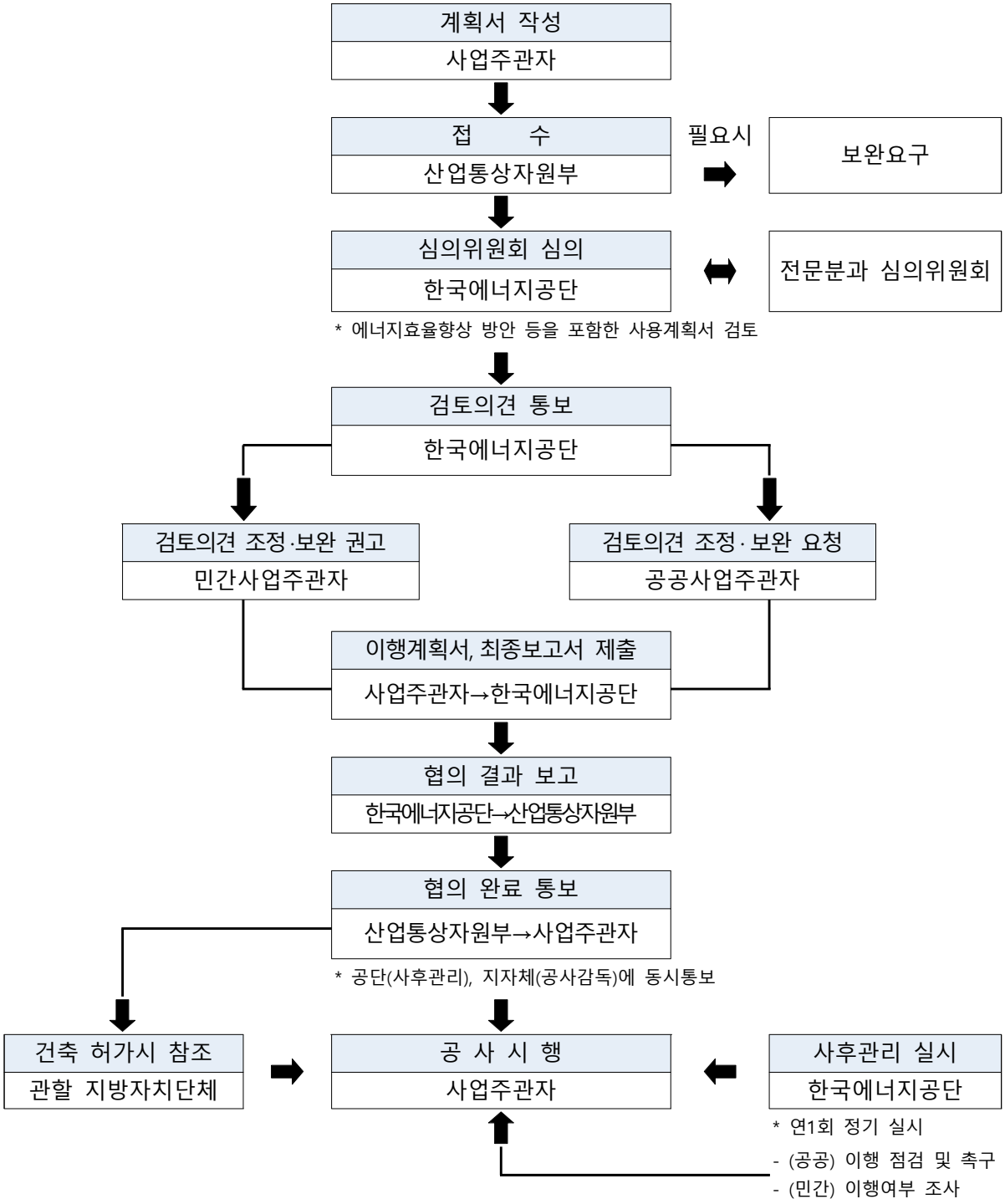
계획서 작성
사업주관자
접 수
산업통상자원부
필요시
보완요구
심의위원회 심의
한국에너지공단
전문분과 심의위원회
* 에너지효율향상 방안 등을 포함한 사용계획서 검토
검토의견 통보
한국에너지공단
검토의견 조정·보완 권고
민간사업주관자
검토의견 조정·보완 요청
공공사업주관자
이행계획서,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주관자→한국에너지공단
협의 결과 보고
한국에너지공단→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완료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사업주관자
* 공단(사후관리), 지자체(공사감독)에 동시통보
건축 허가시 참조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 사 시 행
사업주관자
사후관리 실시
한국에너지공단
* 연1회 정기 실시
- (공공) 이행 점검 및 촉구
- (민간) 이행여부 조사